

2. 宅地所有上限에 관한 法律施行規則中 改正令(案) 立法豫告

建設交通部公告 第1996-141號 1996. 5. 11

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주 요 골 자

- 가. 택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자 등록시 제출서류를 대폭 축소하여 국민 불편사항해소
- 나.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용 택지의 이용·개발의무기간 연장신청 서식을 마련하고, 건축불가확인(신청)서 등 일부서식을 법정서식으로 정비
- 다.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기한이 현행 부담금액에 따라 2단계로 구분된 것을 3 단계로 세분화하여 납부자의 부담금 마련에 편의 제공
- 라.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환급가산금의 지급기간이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실제 지급일의 개념을 명확히 함.
- 마.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서식의 제·개정

개 정 이 유

택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자 등록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,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